

## 18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대 상 :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 지원금액 : 1인 월 50만원 (현금지급)
- 신청기간 : 2020년 5월 4일 ~ 5월 15일  
(방문접수) 5. 11 ~ 5. 15, 10:00~17:00(12:00~13:00제외)
- 신청절차 : 비대면 접수 우선(우편, E-mail, 불가피할 경우 방문 접수)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신청서류 ◆ [고시공고 바로가기]

- ①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서식1)
- ② 특고·프리랜서 입증 서류(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 ③ 노무미제공 확인서(서식2) 또는 소득감소 확인 서류
- ④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서식3)
- ⑤ 부당이득반환 서약서(서식4)
- ⑥ 근로자 본인 통장 사본
-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원 전체)
- ⑧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A

####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①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자 또는 일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이 감소한자로,
- ② 2020.2.23.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파주시에 거주해야 하며,  
\* 2.23 이후 경기도내 거주자가 파주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는 파주시에서 접수 가능
- ③ 특고·프리랜서임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자 중,
- ④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충족한 자

### ■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20. 2. 23 ~ '20. 3. 31 기간동안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분들을 대상으로 5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예산 부족으로, 2차 접수(4월분)은 받지 않으며, 중위소득 기준 증가(150%)로 3월 분에 대한 추가접수만 실시합니다.(기 신청자 접수 불가)

###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비대면 접수(우편, e-mail 등)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만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①우편 : 파주시 시청로 50, 차고동 2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우10932)

②전자우편(e-mail) : yyjno1@korea.kr

③방문접수 : 파주시청 차고동 2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 평일 10시~17시(12시~13시 접수 불가, 공휴일·주말 제외)

### ■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은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1차 신청에 대한 지원금은 5월 20일까지, 1차 추가 신청 지원금은 6월 1일 이후 지급 될 예정입니다.

###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수급자 및 생계급여 대상자 등 복지급여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보건복지부) 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파주형 긴급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파주형 긴급생활 지원금(1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0만원)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 ■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식1~4 는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 ◆ [\[고시공고 바로가기\]](#)

연번	서류명	설명 및 발급처
1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서식1 (자필서명)
2	특고·프리랜서 입증 서류	·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납품계약서, 위촉서류 등
3	택 1 노무 미제공 확인서(5일 이상)	· 서식2 (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 2019년 11월~ 2020년 1월의 3개월 평균 수익과 제출한 1달(3월) 간 수익을 비교 · 급여 받은 통장거래내역 등
	소득감소 확인 서류(25% 이상)	
4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서식3 (자필서명)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약속서	· 서식4 (자필서명)
6	근로자 본인 통장 사본	· 지원금 지급 계좌 확인용
7	택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원 전체)와 자격(통보)확인서	· 2020년 3월분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 ( <a href="https://www.nhis.or.kr/">https://www.nhis.or.kr/</a> ->건강보 험료 조회->세대보험료 조회->출력)
	세대보험료 조회 내역	
8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신고일 표시)	· 2020.2.23. 이후 경기도내에서 파주시로 전입 온 자는 초본(주소이력)필요 · 정부24( <a href="http://www.gov.kr">http://www.gov.kr</a> ) 인터넷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서식2의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는 문구수정 가능한가요?**

☞ 서식2는 해당 직종의 특고·프리랜서가 총00일의 일수동안 일을 하지 못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모든 직종의 사업장 이름 및 업무명을 명시해 드릴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 별로 문구를 수정하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 노무미제공 총 일수는 반드시 표기

ex) (수정문구) 위 학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 000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00.00~00.00까지 총 00일 동안 방과 후 강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어떤 업종을 말하나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의 종사자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업종 예시>

① 교육 관련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학원강사, 문화센터강사, 방과후 교사 등
② 여가 관련	공연예술인 등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 가이드 등 관광 서비스 종사원, 골프장경기보조원(골프장캐디) 등
③ 운송 관련	대리운전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관련,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건설기계 운전원(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 제외) 등
④ 기타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간병인, 아이돌보미, 검침원(수도, 가스, 전기 등), 녹즙배달원, 야쿠르트 판매·배달원, 화장품 방문판매원, A/S기사, 정수기·비데 등 방문 점검원, 행사도우미, 간병인, 요양보호사, 헤어디자이너, 세신사 등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직종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수탁 계약의 형태를 띠는 프리랜서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코로나19로 일을 수행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서류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으로 판단 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가능할 수 있음

**■ 거주지는 파주시이지만 일은 다른 시군에서 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특고·프리랜서 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자이면 파주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는 무슨 뜻인가요?**

☞ 2020년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 했을 때 정확히 중간 구간의 1.5를 곱한 소득  
<2020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수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원)	지역가입자(원)	혼합(원)
1인	2,636,000	88,344	63,778	
2인	4,488,000	150,025	147,928	151,927
3인	5,806,000	195,200	203,127	198,402
4인	7,124,000	237,652	254,909	242,715
5인	8,442,000	286,647	308,952	298,124
6인	9,760,000	326,561	349,099	343,406
7인	11,085,000	402,261	426,790	437,059
8인	12,410,000	437,059	462,265	471,545
9인	13,735,000	471,545	495,914	519,517
10인	15,060,000	519,517	544,044	602,065

☞ 기준 중위소득기준 금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ex) 세대주, 배우자, 자녀2인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의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서 각각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 합이 20만원 일 경우 4인 기준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254,909원보다 적으므로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출력하고 세대원의 보험료를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 세대보험료 조회 -> 출력)

**■ 기타문의**

- 파주시 일자리경제과(031-940-8400)